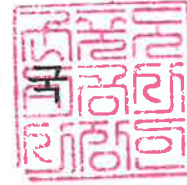


군포도시공사 제1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



2025년 3월 17일

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49 호

## 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하여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2호를 신설한다.

1. 난임치료휴가: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5조 1항의 별표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35조 관련)

출산	배우자(처)	20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경영기획실
입안자	직위 성명 경영기획실장 곽성우
	직위 성명 인사총무팀장 신재두
담당자 성명 (전화)	김재덕 (390-7609)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7조(법정휴가)</b>                      ① (생략)                      1. (생략)                      2. 유급휴가                      가.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나. ~ 바. (생략)                      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아. ~ 차. (생략)</p>	<p><b>제27조(법정휴가)</b>                      ① (현행과같음)                      1. (현행과같음)                      2. 유급휴가                      가.-----                      -----(미숙아를 출산하여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                      -----                      -----                      -----.                      나. ~ 바. (현행과같음)                      사. ----- 32주 이후-----                      -----                      -----                      -----                      -----                      -----.                      아. ~ 차. (현행과같음)</p>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1. 난임치료휴가: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u>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u>최초 1일은 유급</u>으로 한다.</u>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p>2. &lt;신설&gt;</p> <p>제35조(특별휴가)</p> <p>① ~ ⑤ (생략)</p>	<p>② (현행과같음)</p> <p>1. ----- ----- ----- -----<u>연간 6일 이내의 휴가</u>-----<u>최초 2일은 유급</u>----- ----- ----- ----- ----- -----.</p> <p>2. <u>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u></p> <p>제35조(특별휴가)</p> <p>① ~ ⑤ (현행과같음)</p>

현           행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출 산	배우자(처)	<u>10</u>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개           정           안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출 산	배우자(처)	<u>20</u>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u>3</u>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제7항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3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3]

■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3]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